

#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안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제정(2008.6.13, 법률 제9118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구조조정자금 지급기준 및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분담금 납부기한은 도축장 발부일 부터 30일 이상이며 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도축업허가증, 도축장영업폐업신고서, 적정이윤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 ■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축장구조조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담금의 징수 등)** 「도축장구조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도축장경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조(도축장의 발부)** ① 협의회는 도축장경영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도축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의 제한 및 법 제12조의 축산시책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
- ② 제1항제2호의 납부기한은 도축장발부일 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조정자금의 신청)** 법 제9조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도축장경영자는 별지 제1호의 조정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사본 1부
2. 영업폐업신고서(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사본 1부
3. 제2호의 신고에 따른 신고수리 기관의 신고수리 통보 내용 증명서류
4. 도축장의 적정이윤 산정을 위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5조(조정자금 지급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등급을 정하여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신청 받은 조정자금이 조정자금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자금은 도축장의 도축실적과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지원하며, 등급의 지정 및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협의회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정자금지급 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법 제2조제6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가 법 제3조제6항 각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

부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연간 도축두수에 따른 등급표〉

연간 도축	소도축	0~3,000두	3,001~10,000두	10,001두 이상
0~100,000두		E등급	D등급	C등급
100,001~200,000두		D등급	C등급	B등급
200,001두 이상		C등급	B등급	A등급

〈도축장 자산기지 등급표〉

등급	20억원 이하	20억원 이상~35억원	35억원 이상~50억원	50억원 이상~75억원	75억원 이상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등급별 지원기준〉

도축실적	E등급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자산기지					
E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D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C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B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A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 비교

1. 도축장의 도축실적에 따른 등급은 '연간 도축두수에 따른 등급표'를 기준으로 협의회에서 'A' ~ 'E'를 정한다.
2. 도축장의 적정이유에 따른 등급은 '도축장 자산기지등급표'를 기준으로 협의회에서 'A' ~ 'E'를 정한다.

3. 해당 도축장의 조정자금은 '등급별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정해진 등급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